

군산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0월 8일

군산시 훈령 제385호

군산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무원근로자 신규채용시 관리부서에서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채용예정 분야, 인원,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원근로자로 전환 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일”을 “7일”로, “재직한”을 “30년 미만 재직한”으로, “12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1회에 한하여”를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

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가일수가 7일인 경우 2회, 15일인 경우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가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4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는”을 “제4호의 경우”로 한다.

1. 제40조 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채용) ① (생략) <u><신 설></u></p> <p>② · ③ (생략)</p>	<p>제8조(채용)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시 관리부서에서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채용예정 분야, 인원,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u> <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p>
<p>제37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직 근로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u>12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1회에 한하여 허가</u>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생략) <u><신 설></u></p> <p>2. · 3. (생략)</p>	<p>제37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7일</u>----- <u>30년</u> 미 <u>만 재직한</u> ----- -- <u>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u> ---- ----- . ----- ----- . -----</p> <p>1. (현행과 같음) 2. <u>휴가일수가 7일인 경우 2회,</u> <u>15일인 경우 3회에 걸쳐 분할하</u> <u>여 사용할 수 있다.</u></p> <p>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p>

<신 설>

<신 설>

제3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원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1. ~ 4. (생략)

<신 설>

<신 설>

같음)

③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가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공가) -----

-----.

- 1. ~ 4. (현행과 같음)
- 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5.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
제42조(휴직기간 및 급여) 공무원
근로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 설>

- 1. 제40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
우는 1년 이내
- 2. ~ 4. (생 략)

7. -- 밖의 -----

제42조(휴직기간 및 급여) -----

-----.

- 1. 제40조 제1호의 경우 1년 이
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 ---- 제4호의 경우 -----

-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별표 1】 공무원 근로자의 정수표(제5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행정실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 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직원	정규직 전환자		
		소계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소계	공무원 전환자	국도비 전환자
계	438	125	5	9	6	1	104	31	41	57	4	180	70	110
공보담당관	2	1					1					1	1	
행정지원과	29	5					5			16		8	8	
기획예산과	1	1					1							
회 계 과	1	1					1							
세 무 과	1	1					1							
시민납세과	2	2					2							
열린민원과	4	4					4							
교육지원과	1	1					1							
정보통신과	1	1					1							
소상공안지원과	1	1					1							
산업혁신과	2	2			1		1							
인자리정책과	3	1					1					2	2	
항만해양과	1	1	1											
수산진흥과	3	1					1					2	2	
산림녹지과	22										4	18	18	
문화예술과	2	2					2							
관광진흥과	3	3					3							
체육진흥과	19	9		9						3		7	7	
경로장애인과	7	2	2									5	1	4
이동청소년과	63	2	1				1					61	4	57
여성가족과	1	1					1							
자원순환과	45								41	3		1	1	
건 설 과	21	3					3	18						
건축경관과	2											2	2	
교통행정과	13	13	1		5		7							
토지정보과	4	4					4							
보 건 소	49	10					10			3		36	4	32
농업기술센터	15	2					2			3		10	7	3
수 도 과	19	3					3	5		10		1	1	
하 수 과	11	1					1	8				2	2	
예술의전당관리과	6									6				
사람과관리과	47	20					20			7		20	6	14
박물관관리과	19	10					10			6		3	3	
차량등록사업소	9	9					9							
의회사무국	9	8				1	7					1	1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7조제1항과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징 계 양 정 기 준 (제56조의2 관련)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의가 경 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 과실인 경 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고	해고-정 직	정 직-감봉	견책-경고	
2. 복종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 직	정 직-감봉	견책-경고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책-경고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책-경고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 직	정 직-감봉	견책-경고	
6.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책-경고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책-경고	
8. 집단행위금지 위반		해 고	해고-정 직	정 직-감봉	견책-경고	
음주운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정 직-감봉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 직-감봉		
	음주행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해고-감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해고-정 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 직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교통사고	검찰·경찰 통보 받은 일반 교통사고	구 분	기 소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고의, 도주)	정 직-해고	경 고	주 의	불 문
		12대 항목위반 교통사고 (3주 이상 상해)	경고-견책	경 고	주 의	불 문
		일반 교통사고 (3주 이상 상해)	경 고	주 의	주 의	불 문
	기타 교통사고(접촉사고)	주 의	불 문	불 문	불 문	불 문
청렴의무 위반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 직-감봉	해고-정 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 직	해고-정 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 직	해고	해고	

군산시 공고 제2020-2051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기금의 지출 범위 확대(안 제5조)
- 기금운용관 명칭 변경 및 기금출납원 변경(안 제14조)
-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7조)

3. 의견제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문화예술과(전화 : 454-3283, FAX : 063-454-326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전화 063-454-3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2020-2051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정책계장**”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p> <p>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 ----- -----.</p>
<p>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u>문화예술과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u>문화정책계장</u>이 된다.</p> <p>② (생략)</p>	<p>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u>문화예술진흥기금</u> 업무담당과장-----<u>문화예술진흥기금</u> 업무담당계장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 <u>2025년 12월 31일</u> -----.</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20 - 2054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역개발 및 지리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면동 간 경계조정
- 나.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들의 행정 및 문화편의 도모
- 다. 1개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뉘어져 주민불편 해소

2. 주요내용

- 행정동 변경:
 - 옥산면 당북리 410-18 외 13개 지번에 대해 옥산면에서 수송동으로 편입함.
 - 개정면 옥석리 256-51 외 11개 지번에 대해 개정면에서 옥산면으로 편입함.
 - 회현면 대정리 749-1 외 4개 지번에 대해 회현면에서 옥산면으로 편입함.
 - 동흥남동 77-4 외 10개 지번에 대해 흥남동에서 수송동으로 편입함
- 법정동 변경: 미룡동 287-51외 1개 지번에 대해 신관동으로 편입함.

경계조정 결정 대상지 내역

① 옥산면 당북리 410-27외 ⇒ 수송동 편입

- ❖ 조정 규모
 - 면적 : 5,822㎡, 인구 : 0명
- ❖ 조정사유
 - 옥산면에서 수송동으로 편입 요구
- ❖ 검토의견

필지에 2개의 동이 걸치게 되어 재산권 행사 및 직불금등 불편초래하여 구역조정필요



② 개정면 옥석리 665-1외 ⇒ 옥산면 쌍봉리 편입

- ❖ 조정 규모
 - 면적 : 17,080㎡, 인구 : 0명
- ❖ 조정사유
 - 개정면에서 옥산면으로 편입 요구
- ❖ 검토의견

필지에 2개의 동이 걸치게 되어 재산권 행사 및 직불금등 불편초래하여 구역조정필요



③ 회현면 대정리 749-1외 ⇒ 옥산면 금성리 편입

- ❖ 조정 규모
 - 면적 : 5,177㎡, 인구 : 0명
- ❖ 조정사유
 - 회현면에서 옥산면으로 편입 요구
- ❖ 검토의견

필지에 2개의 동이 걸치게 되어 재산권 행사 및 직불금등 불편초래하여 구역조정필요



④ 동홍남동 394-7외 ⇒ 수송동으로 편입

- ❖ 조정 규모
 - 면적 : 1,177㎡, 인구 : 3명(1세대)
- ❖ 조정사유
 - 동간 경계구분 불합리
- ❖ 검토의견
 - 구 도로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경계를 신도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⑤ 미룡동 287-52외 ⇒ 신관동으로 편입(법정동 변경)

- ❖ 조정 규모
 - 면적 : 1,322㎡, 인구 : 6명(2세대)
- ❖ 조정사유
 - 도로 및 실제 거주여건 반영
- ❖ 검토의견
 - 경계선이 마을을 분할하고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주민의 주 생활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 063-454-2245,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cheolan777@korea.kr),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454-224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군산시 조례 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수송동 관할구역에 옥산면 당북리와 동흥남동 일부지역을, 옥산면 쌍봉리 관할구역에 개정면 옥석리 일부지역을, 옥산면 금성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대정리 일부지역을, 신관동 관할구역에 미룡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5” 와 같다

제2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옥산면 당북리, 개정면 옥석리, 회현면 대정리, 미룡동, 동흥남동 중 제1조 제10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5” 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옥산면 당북리 → 수송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4필지		8,557			
1	옥산면	당북리	410-18	답	416	수송동	수송동	1,026
2	옥산면	당북리	410-19	답	983	“	“	1,027
3	옥산면	당북리	410-20	답	1,296	“	“	1,028
4	옥산면	당북리	410-21	답	1,601	“	“	1,029
5	옥산면	당북리	410-22	답	673	“	“	1,030
6	옥산면	당북리	410-23	답	2	“	“	1,031
7	옥산면	당북리	410-24	답	162	“	“	1,032
8	옥산면	당북리	410-25	답	301	“	“	1,033
9	옥산면	당북리	410-26	답	230	“	“	1,034
10	옥산면	당북리	410-27	답	158	“	“	1,035
11	옥산면	당북리	410-60	구	482	“	“	1,036
12	옥산면	당북리	410-65	구	329	“	“	1,037
13	옥산면	당북리	410-69	구	73	“	“	1,038
14	옥산면	당북리	1001	구	1,851	“	“	1,039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개정면 옥석리 → 옥산면 쌍봉리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4필지		17,080			
1	개정면	옥석리	664-1	답	4,279	옥산면	쌍봉리	1,166
2	개정면	옥석리	664-2	답	3,889	“	“	1,167
3	개정면	옥석리	664-3	답	2,734	“	“	1,168
4	개정면	옥석리	664-5	답	417	“	“	1,169
5	개정면	옥석리	664-6	답	426	“	“	1,170
6	개정면	옥석리	664-7	답	446	“	“	1,171
7	개정면	옥석리	664-8	구	1,980	“	“	1,172
8	개정면	옥석리	664-9	답	85	“	“	1,173
9	개정면	옥석리	664-10	답	45	“	“	1,174
10	개정면	옥석리	665-1	답	1,140	“	“	1,175
11	개정면	옥석리	665-2	답	1,560	“	“	1,176
12	개정면	옥석리	665-3	답	79	“	“	1,177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회현면 대정리 → 옥산면 금성리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2필지		5,240			
1	회현면	대정리	749-1	답	415	옥산면	금성리	337
2	회현면	대정리	749-2	답	1,695	“	“	338
3	회현면	대정리	749-3	답	2,532	“	“	339
4	회현면	대정리	749-4	답	535	“	“	340
5	회현면	대정리	749-5	답	63	“	“	341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동흥남동 → 수송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11필지		2,390			
1	흥남동	동흥남동	77-4	구	225	수송동	수송동	1,015
2	흥남동	동흥남동	77-5	대	3	“	“	1,016
3	흥남동	동흥남동	78-15	구	79	“	“	1,017
4	흥남동	동흥남동	78-16	대	20	“	“	1,018
5	흥남동	동흥남동	78-18	대	20	“	“	1,019
6	흥남동	동흥남동	78-19	구	3	“	“	1,020
7	흥남동	동흥남동	394-6	구	836	“	“	1,021
8	흥남동	동흥남동	394-7	대	963	“	“	1,022
9	흥남동	동흥남동	394-8	대	115	“	“	1,023
10	흥남동	동흥남동	394-9	답	66	“	“	1,024
11	흥남동	동흥남동	395-4	구	60	“	“	1,025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나운3동 (미룡동) → 나운3동(신관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후 지번		
	행정동명	법정동명				행정동	법정동	지 번
	소 계		2필지		1,322			
1	나운3동	미룡동	287-51	대	661	나운3동	신관동	970
2	나운3동	미룡동	287-52	대	661	“	“	97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⑨ (생략) ⑩ <신 설></p>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u>수송동 관할구역에 옥산면 당북리와 동흥남동 일부지역을, 옥산면 쌍봉리 관할구역에 개정면 옥석리 일부지역을, 옥산면 금성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대정리 일부지역을, 신관동 관할구역에 미룡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u></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⑨ (생략) ⑩ <신 설></p>	<p>제 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u>옥산면 당북리, 개정면 옥석리, 회현면 대정리, 미룡동, 동흥남동 중 제1조 제10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5”와 같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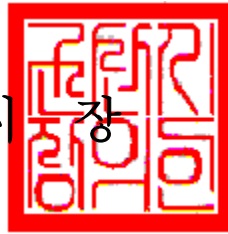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2020-2055호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조항 신설
 -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나.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의 위촉
- 나.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 다.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

3. 의견제출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45, FAX: 063-454-382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063-454-3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 2.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군산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0-2059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5년이내)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간 2020.12.31.을 2025.12.31.로 변경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 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산업혁신과(투자유치계)

○ 전화 : 063)454-2735, FAX : 063)454-27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전화 063-454-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5년 12월 31일</u> ----- -----.

군산시 공고 제2020-2060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구암동 소룡동 지역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별첨]

가. 중앙동 : 4개통 16개반 증 ⇒ 신축아파트 입주(레비뉴스테이)
15, 16, 17, 18통 신설

나. 흥남동 : 2개통 6개반 증 ⇒ 신축아파트 입주(천년가더스테이)
3통 조정 및 26, 27통 신설

다. 조촌동 : 3개통 12개반 증 ⇒ 신축아파트 입주(e편한2차) 및 조정
3통 분할 조정 및 48, 49, 50통 신설

라. 구암동 : 8개통 29개반 증 ⇒ 신축아파트 입주
 (오션클래스, 내흥7LH아파트)

마. 소룡동 : 1개통 5개반 감 ⇒ 0세대 거주지역 1개통 제외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 063-454-2246, FAX 454-2227)
- 전자우편 : dearckdwn@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 063-454-22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아·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번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읍면총계란**을 “별표 1번”과 같이 한다.

별표(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2번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중앙동 15통, 16통, 17통, 18통**을 “별표 2번”과 같이 **신설**하고, **홍남동 3통의 조정과 26통, 27통** 관할 구역 **신설**을 “별표 3번”과 같이 하며, **조촌동 3통의 조정과 48통, 49통, 50통** 관할 구역 **신설**을 “별표 4번”과 같이 하고, **구암동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을 “별표 5번”과 같이 **신설**하며, **소룡동 1통**을 “별표 6번”과 같이 **삭제**하고, **동총계란**을 “별표 7번”과 같이 한다.

- 별표 1 -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총계	73	342	637	

- 별표 2 -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금암동	15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1호~3801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2호~3802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3호~35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4호~3504호) 상가 전체 (101호~117호, 201호~215호)
	16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2902호~4003호),103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703호~3504호)
	17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401호~32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302호~2904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004호~3504호),105동(401호~1802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5동(1902호~4003호)
	18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2902호~4003호),107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703호~3504호)
동계	18	78	

- 별표 3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대명동	3	1	385의 1, 5, 8~17, 19~24, 50, 387의 1~9, 11~14, 17~18	
		2	386의 1~8, 10~15, 22~32, 36~44	
		3	388의 1~7, 10~11, 13~19	
		4	384의 24~41, 44~46, 48, 55~58, 60, 62~65	
		5	대명동 384의 1~3, 5~12, 42, 47, 49~50, 대명동 384의 14~16, 18~22, 43, 52, 54	
	26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1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2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3동 전체	
	27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4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5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6동 전체, 상가	
	동 계	27	124	

- 별표 4 -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2	136, 138, 140, 183~184, 323, 351, 924~925	
		3	910~916	
		4	917~921	
	48	1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1동 101~1304호)	
		2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1동 1401~2904호)	
		3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2동 201~1404호)	
		4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2동 1501~2901호)	
	49	1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3동 101~1404호), 상가	
		2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3동 1501~2902호)	
		3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4동 101~1404호)	
		4	3967(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2차 304동 1501~2904호)	
	50	1	748, 748의 1(동산연립주택)	
		2	747, 747의 16(삼성연립주택)	
		3	922~923	
		4	190~191, 880	
	동 계	50	211	

- 별표 5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내 흥 동	17	1	925 오션클래스 101동 전체, 상가
		2	925 오션클래스 102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03동 201호 ~ 2402호
		4	925 오션클래스 103동 303호 ~ 2404호
	18	1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1호 ~ 2503호
		2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4호 ~ 2505호
		3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1호 ~ 2503호
		4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4호 ~ 2505호
	19	1	925 오션클래스 106동 101호 ~ 2303호
		2	925 오션클래스 106동 304호 ~ 2305호
		3	925 오션클래스 107동 301호 ~ 2503호
		4	925 오션클래스 107동 104호 ~ 2505호
	20	1	925 오션클래스 108동 전체
		2	925 오션클래스 109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10동 전체
		4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1호 ~ 2102호
		5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3호 ~ 2104호
	21	1	927 내흥7LH아파트 701동 301호 ~ 2003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1동 104호 ~ 2006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1동 307호 ~ 2010호
	22	1	927 내흥7LH아파트 702동 101호 ~ 1904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2동 105호 ~ 1908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2동 109호 ~ 2012호
	23	1	927 내흥7LH아파트 703동 301호 ~ 1904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3동 305호 ~ 1908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3동 109호 ~ 2012호
	24	1	927 내흥7LH아파트 704동 301호 ~ 2003호
		2	927 내흥7LH아파트 704동 304호 ~ 2006호
3		927 내흥7LH아파트 704동 307호 ~ 2010호, 상가	
동 계	24	116	

- 별표 6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소룡동	1	1	삭 제
		2	
		3	
		4	
		5	
동계	33	131	

- 별표 7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동총계	497	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별표]

1.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총계	73	341	637			73	342	637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금암동				금암동	15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1호~3801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2호~3802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3호~35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1동(404호~3504호) 상가 전체 (101호~117호, 201호~215호)
					16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2동(2902호~4003호), 103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3동(703호~3504호)
					17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401호~32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302호~2904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4동(3004호~3504호), 105동(401호~1802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5동(1902호~4003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금암동				금암동	18	1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401호~2802호)
						2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6동(2902호~4003호),107동(401호~1501호)
						3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1601호~603호)
						4	309 하나리움 레비뉴스테이 107동(703호~3504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대명동				대명동	26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1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2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3동 전체
					27	1	405 천년가더스테이 104동 전체
						2	405 천년가더스테이 105동 전체
						3	405 천년가더스테이 106동 전체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136, 138, 140, 183~184, 190~191, 323, 351, 880, 922~925	조촌동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2	748, 748의 1 (동산연립주택)			2	136, 138, 140, 183~184, 323, 351, 924~925	
		3	910~921			3	910~916	
		4	747, 747의 16 (삼성연립주택)			4	917~921	
	조촌동				조촌동	48	1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01~1304호) 군산디 301동
							2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401~2904호) 군산디 301동
							3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201~1404호) 군산디 302동
							4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501~2901호) 군산디 302동
						49	1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01~1404호), 상가 군산디 303동
							2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501~2902호) 군산디 303동
							3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01~1404호) 군산디 304동
							4	3967(이편한세상 오션시티2차 1501~2904호) 군산디 304동
50						1	748, 748의 1(동산연립주택)	
						2	747, 747의 16(삼성연립주택)	
						3	922~923	
						4	190~191, 880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구암동 내흥동	1~16	87					현행과 같음
내흥동				내흥동	17	1	925 오션클래스 101동 전체, 상가
						2	925 오션클래스 102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03동 201호 ~ 2402호
						4	925 오션클래스 103동 303호 ~ 2404호
					18	1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1호 ~ 2503호
						2	925 오션클래스 104동 104호 ~ 2505호
						3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1호 ~ 2503호
						4	925 오션클래스 105동 104호 ~ 2505호
					19	1	925 오션클래스 106동 101호 ~ 2303호
						2	925 오션클래스 106동 304호 ~ 2305호
						3	925 오션클래스 107동 301호 ~ 2503호
						4	925 오션클래스 107동 104호 ~ 2505호
				20	1	925 오션클래스 108동 전체	
					2	925 오션클래스 109동 전체	
					3	925 오션클래스 110동 전체	
					4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1호 ~ 2102호	
					5	925 오션클래스 111동 103호 ~ 2104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내 흥 동				내 흥 동	21	1	927 내 흥 7LH 아파트 701동 301호 ~ 2003호
						2	927 내 흥 7LH 아파트 701동 104호 ~ 2006호
						3	927 내 흥 7LH 아파트 701동 307호 ~ 2010호
					22	1	927 내 흥 7LH 아파트 702동 101호 ~ 1904호
						2	927 내 흥 7LH 아파트 702동 105호 ~ 1908호
						3	927 내 흥 7LH 아파트 702동 109호 ~ 2012호
					23	1	927 내 흥 7LH 아파트 703동 301호 ~ 1904호
						2	927 내 흥 7LH 아파트 703동 305호 ~ 1908호
						3	927 내 흥 7LH 아파트 703동 109호 ~ 2012호
					24	1	927 내 흥 7LH 아파트 704동 301호 ~ 2003호
						2	927 내 흥 7LH 아파트 704동 304호 ~ 2006호
						3	927 내 흥 7LH 아파트 704동 307호 ~ 2010 호, 상가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소 룡 동	1	1	1019의 1	소 룡 동	1	1	삭 제
		2	1019의 1			2	
		3	1019의 42			3	
		4	1019의 44, 46			4	
		5	1019의 6, 45			5	
	2~16	63		2~16	63	현행과 같음	
동총계	480	2,061		동총계	497	2,124	

군산시 고시 제2020-147호

2021년 군산시 생활임금 고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적용되는 군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6

군 산 시 장

1. 2021년 군산시 생활임금

○ 시간급 : 9,420원 / 월급 1,968,780원(209시간 기준)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고용노동부]

2.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3. 적용대상 :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 :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근로자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군산시 공고 제2020-2046호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군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회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관운영관리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계약집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특대상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군산시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군산시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9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4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25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 출연금 동의안
26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산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9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1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020년 10월 7일

군 산 시 장